



정 관

[2020.06.17.]

제5차 개정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① 이 단체는 군인권센터(이하 ‘본 센터’)라 칭한다.
- ② 본 센터의 영문표기는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약칭 ‘CMHRK’)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위치

본 센터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임을 인식하고, 군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며, 군대 내의 반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과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대한민국 헌법 및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교육사업: 예비입영자 인권학교, 인권캠프, 상담원 교육, 내부 연수 등등
2. 정책사업: 토론회, 정책 연구 및 제안, 국방 정책 및 예산 감시 등등
3. 상담사업: 아미콜 군인권 침해 신고/상담 등등
4. 홍보사업: 군인권 의식 개선, 목적 사업 및 아미콜 홍보 등등
5. 연대사업: 국제연합 및 그 산하 기구 그리고 국내·지역·국제·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활동 또는 협력사업 등등
6. 기타사업: 기타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구분과 자격

- ①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 ② 제3조에 찬동하고 본 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서면(이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본 센터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원가입신청서에 약정한 첫 회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본 센터의 후원회원이 된다.
-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후원회원이다.
 1. 후원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지 6개월이 지난 자
 2. 제7조 제3호를 미준수한 지 연속하여 6개월이 넘지 아니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본 센터의 회원은 제4조와 관련된 사업 진행 및 결과와 재정상황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센터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약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적시 납부

제8조 회원명부

- ① 본 센터는 회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② 본 센터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회원명부를 제3자에게 개별 회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탈퇴와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탈퇴사유와 그 발효일을 특정하여 본 센터 사무국에 유·무선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을 발동한 시점 이전에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단, 사무국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회비 추가분은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③ 본 센터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 각 호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으며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직책과 정수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 운영위원장: 1인
3. 소장: 1인
4. 운영위원: 3인 내지 20인
5. 감사: 1인 내지 3인

제11조 임원 자격

- ① 임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신망 있는 자로서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과 소장은 상호 겹칠 수 없다.

제12조 임원 선출

-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장 후보는 현직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로부터 9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후임자는 총회 인준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받는다.
- ④ 결위된 임원의 후임자 보선과 그 권한의 인정은 제③항을 준용한다. 단, 결위된 날짜로부터 다음 총회 회의 전까지 남은 기간이 90일 미만일 시 해당 임원의 후임자는 선출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원 임기

- ①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 혹은 임기가 만료하는자는 해당 사유 발생 30일 이전에 운영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고문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본 센터의 발전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과 소장은 총회의 공동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제3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지휘한다. 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다.
- ④ 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25조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는 본 센터의 운영 및 재산 상황,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한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의 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 소집

- ① 공동의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② 총회 소집 시에는 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재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소집 특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5분의 3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⑤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기타 사항

제19조 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회의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18조 제2호
 2. 제40조 제②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 ② 제①항의 개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소장은 유회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권 행사 특례

- ①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공동의장 중 1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위임자는 총회 개시 전까지 해당 공동의장 중 1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동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위임된 의결권은 총회 투표 결과 중 우세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국가 재난 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 소집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경우, 총회는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만을 상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소송 또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공동의장 혹은 제17조 제③항에 따른 의장일 때

제22조 총회 의사록

- ① 사무국은 총회의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회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정회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 지위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제31조 제②항에 따른 사무국(처)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사무국(처)장은 제②항에 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 구분 및 소집

- ① 공동위원장은 상호 합의한 날에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③ 제②항 제2호·제3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공동위원장 모두 운영위원회를 개최 또는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 중에서 권한을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
- ⑤ 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재적 운영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각종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부속 위원회 위원 위촉과 해촉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운영위원회 부의한 기타 사항

제26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 제3호·제4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①항의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가 유회된 때에는 공동위원장은 유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의 특례

- ① 운영위원은 공동위원장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이 의결권은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중 우세한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운영위원은 공동운영위원장과 제외한 다른 운영위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 받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은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1일 전까지 공동위원장 중 1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운영위원은 출장 등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출석 위원 전원이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 장비,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의결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고 다른 운영위원의 반대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 의결 제척 사유

운영위원이 소송, 징계, 금전 또는 재산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신과 본 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부속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 의사록

-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정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2인 이상의 출석 운영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소장은 운영위원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운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속 위원회

제30조 부속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지명 및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임원 및 사무국(처) 구성원의 포상 및 징계, 임원 및 사무국(처)장의 선

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사위원은 현직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매번 최소 3명을 선출한다.

- ③ 소장은 사무국(처)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행위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지명 및 위촉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운영위원장 또는 소장은 제3조를 달성하기 위해 기타 부속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처)

제31조 사무국(처) 권한 및 구성

- ① 본 센터의 조직, 운영, 사업, 활동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처)을 둈다.
- ② 사무국(처)은 소장 1인과 사무국(처)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처)원으로서 사무국(처)장 1인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처)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선임한다. 사무국(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사무국(처)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사무국(처)원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를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동등한 권리와 인권옹호자로서 책무를 진다. 본 센터 임원과 사무국(처)원은 이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 8 장 지부 및 부설 기구

제33조 지부 설립 등

본 센터는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31조 제③항을 준용하여 지부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부설 기구 설립 등

- ① 본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통해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재정 및 회계 관리

본 센터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정 및 회계를 관리한다.

제37조 예산

-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소장은 한 회계연도 개시부터 당해 연도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소장은 총회의 예산 승인 후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④ 본 센터의 총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38조 결산

- ①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에 관한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센터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본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9조 재정 구분

본 센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분한다.

1. 후원금: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이 출연한 기부금 등
2. 기타 수입: 1호 외 기타 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기타 잡수입 및 기부물품 등

제40조 자산 구분

- ① 본 센터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을 포함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41조 자산 관리

- ① 본 센터의 기본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센터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 센터는 월수입의 15%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2조 금여 등

- ① 본 센터는 상근하는 임원 및 사무국(처)원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단, 상근하는 임원이라도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제②항을 대신 적용할 수 있다.

- ② 본 센터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및 사무국(처)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거나 제①항에 준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 품위유지비 등을 활동비로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본 센터는 상근하는 임원 및 사무국(처)원의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적립금을 마련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이용한다.

제43조 차입금

본 센터가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재적 운영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4조 해산 사유

본 센터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할 수 있다.

1. 제3조를 달성하였을 때
2. 총회가 제3조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45조 해산 절차

- ① 제44조 각 호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총회는 의결로써 해산을 개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①항의 발효 이후 1개월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운영위원장과 소장 그리고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최소 3인으로 한다.

제46조 잔여 재산 귀속

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청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11 장 보 칙

제47조 기타

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하여 정관 및 내규로써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달리 법률에 정함이 없다면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일

1. 이 정관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인준 시로부터 시행한다. <2009.09.21.>
2. 이 정관 전부개정안은 총회의 인준 시로부터 시행한다. <2013.02.21.>
3. 이 정관 전부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로부터 시행한다. <2016.03.24.>
4. 이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로부터 시행한다.
<2016.09.07.>

제42조 제②항 중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5. 이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시로부터 시행한다. <2019.03.28.>
제1조 제②항 중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for Korea (MHRCK)”를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로 한다.
6. 이 정관 전부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 시로부터 시행한다.
<2020.06.17.>